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56호

「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·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, 행정 제재의 가중처분 시 차수 계산 기준이 미비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·적용에 따라 국민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

이에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행정기관에 가중처분의 적용시점 및 차수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“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”을 권고(‘21.2)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

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시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제시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감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
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03)

전화 : 044-201-3088, 팩스 : 044-201-5506